

『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』
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

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「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」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 3일

한국전력공사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장, 나주 강소특구 공동연구기관장

1 사업개요

- ☐ 사업명 :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
- ☐ 사업목적 : 전남 나주 강소특구 내 기술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과 육성
- ☐ 사업기간 : 선정일 ~ 2026년 12월 31일
- ☐ 사업내용 : 유망 아이템(기술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을 통한 나주 특구 내 사업화 성공률 제고

2 모집 및 지원내용

- ☐ 모집대상 : 나주시 내 에너지 관련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
 - ※ (예비창업) 2026. 1. 1. ~ 2026. 12. 31.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에 한함
 - 2026. 12. 31. 이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(‘창업의향서’ 제출 必)
 - ※ 2026년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프로그램 지원기업 제외
- ☐ 모집규모 : 최대 4개사 내외 (예산 범위 내)
- ☐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5,000천원(VAT 포함)

□ 지원내용

구분	내용	모집규모	지원금액 (VAT 포함)	지원방식
사업화 지원* (시제품 제작지원)	-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지원 (재료비, 외주용역비) ※ 자산성 장비 등은 구입 불가	4개社 내외	5,000천원	주관기관이 공급(외주)업체와 직접 계약·집행하는 간접지원 방식
창업 후속 지원	창업 성장 지원 IR 데모데이 등 투자 연계 지원, 후속 모니터링, 입주 연계 지원, 타 정부 지원사업 정보 제공, 네트워킹 등			

□ 추진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
수시모집 및 접수	공고일 ~ 2026. 9. 30.	지원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도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선정평가	적격심사, 서류평가	수시접수 로 접수시점 15일 內 지원여부 통보
시제품제작	선정일 ~ 2026. 12.	재료비, 외주용역비 간접지원 - 재료비 : 개발원, 선정기업 2자협약 - 외주용역비 : 개발원, 선정기업, 외주업체 3자협약
결과보고서 제출	최종보고서 및 결과물	사업종료일 이후 15일 이내
성과분석	지원성과 파악	모니터링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

※ 상기 일정 및 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

3

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8. 3.(월) ~ 9. 30.(수) ※ 수시모집 및 접수
- 제출서류 :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확약서 등
- 신청방법 : 온라인(e-mail) 접수 / kwg@evedl.or.kr
 - 메일제목 :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 참가신청_신청기업(팀)명

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	김완근 주임	070-4825-1173

□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	비고
1	사업신청서 1부	별첨 1
2	사업계획서 1부	별첨 2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 1부	별첨 3
4	지원사업 참여 협약서	별첨 4
5	창업 의무이행 협약서	별첨 5
6	견적서	-

4 사업참여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참여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취소,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 내용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있음
- 참여팀은 과제종료 후 일정 양식의 실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사업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후, 창업을 시행하는 자는 요청 시 5년간 창업기업 정보를 제공해야 함